순창군 공고 제 2021 - 8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출입금지위반)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6일

순 창 군 수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7. 26. ~ 2021. 8. 9. (15일간)

3. 대 상 자

납부자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 내용	처분내용 / 과태료	반송사유
양*철	641120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소마길 11-12	출입금지위반	1,000,000원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가.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출입금지행위)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순창군 산림공원과로 연락하시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3%) 및 중가산금(매월 1.2%씩 최장 60개월)이 부과되며,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순창군 산림공원과 공원관리계(☎ 063-653-5542)